

茶山 丁若鏞의 閭田制 土地改革思想

愼 鏞 廈*

- | | |
|---------------------|------------------------|
| 一. 머리 말 | 六. 閭田制에 있어서의 田稅制度 |
| 二. 閭田制 土地改革論의 問題意識 | 七. 閭田制와 兵農一致 |
| 三. 井田論·均田論·限田論 批判 | 八. 閭田制에 있어서의 士·工·商의 問題 |
| 四. 閭田制의 內容과 生産 및 分配 | 九. 閭田制 土地改革論의 問題點 |
| 五. 人口와 勞動力의 移動 | 十. 맺 음 말 |

一. 머리 말

茶山 丁若鏞은 자기시대의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도 土地問題와 農民問題에 대해서는 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에 학문적으로 대결하였다.

정약용은 당시 特權的 兩班과 富豪들이 土地를 兼併하고 착취적 地主制度를 발전시킴에 따라 다수의 農民들이 土地를 잃고 小作農과 流民으로 전락되어가는 실정을 매우 우려하였다. 그는 당시 地主制度 하에서의 農民의 처지에 대하여 커다란 同情을 표시하면서 土地問題의 핵심에 있는 地主制度의 弊害를 芟除할 토지개혁안을 구상하였다.

정약용의 土地改革思想은 그의 社會思想 중에서도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정약용의 土地改革思想은 크게 나누어 ① 閭田制 토지개혁사상과 ② 井田制 토지개혁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閭田制 土地改革思想은 정약용이 패기에 넘친 젊은 시절인 38세 때에 당시의 土地制度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구상한 것이고, 井田制 土地改革思想은 그의 사상이 老熟한 경지에 들어선 56세 때에 그의 土地改革思想의 結論으로 구상한 것이다.⁽¹⁾ 정약용의 이 두가지의 土地改革思想의 내용에는 현저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약용이 패기 만만한 젊은 시절에 구상한 閭田制 土地改革思想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²⁾

*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教授

(1) 《俟菴先生年譜》(서울大學校圖書館所藏本) 第2冊, 純祖 17年 丁丑條 참조.

(2) 지금까지 발표된 丁若鏞의 閭田論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① 洪以燮 《丁若鏞의 政治經濟思想研究》(韓國研究院) 1959.

② 鄭奭鍾 〈茶山 丁若鏞의 經濟思想—그의 田制改革案을 중심으로—〉《李海南博士華甲紀念論叢》 1970.

정약용의 閭田制 토지개혁사상은 그의 짧은 논문인 <田論>(7篇)에서 제시되어 있다. <田論>은 짧은 논문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그의 閭田制 土地改革思想의 기본 골격을 모두 담고 있어서 그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構想했었는가를 정리해 낼 수 있다.

정약용의 <田論>은 그가 38세 때인 1799년(正祖 23)에 쓴 논문이다.

정약용의 親筆本으로 보이는 《洌水全書》續集 第7册에 수록되어 있는 <田論>의 머리에는 다음과 같이 그 著作年代가 그의 38세 때임을 밝히고 있다.

此是己未間所作 三十八歲時 與晚來所論不同 今亦錄之. 書曰 皇斂時五福 用數錫厥庶民 斯大義也. 有人焉 其田十頃 其子十人……⁽³⁾

이 《洌水全書》에 의하면 정약용의 <田論>은 그가 38세 때인 己未年(1799)에 쓴 것이며, 그의 晩年(즉 56세 때)의 所論(즉 井田論)과는 同一하지 않으나 全書를 스스로 手定함에 있어서 이제 역시 이를 收錄해 놓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역시 정약용의 親筆本으로 보이는 《與猶堂集》雜文 三에 수록되어 있는 <田論>에는 위의 「此是己未間所作 三十八歲時……」의 著作年代를 밝히는 도입부분과 書經에서의 引用包가 없고 바로 「有人焉 其田十頃 其子十人……」부터 시작하고 있다.⁽⁴⁾

즉 정약용은 내용이 같은 두 개의 田論을 스스로 남기고 있는데 그 하나는 著作年代를 머리에서 밝히고 있고, 다른 하나는 著作年代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이다.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與猶堂集》(78册)은 위의 두가지 親筆本(《洌水全書》와 《與猶堂集》)을 모두 筆寫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두 개의 <田論>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즉 奎章閣所藏 筆寫本 《與猶堂集》 第28册에 수록되어 있는 <田論>은 《洌水全書》를 필사하여 著作年代를 똑 같은 文章으로 38세때의 作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第11册에 수록되어 있는 <田論>은 著作年代를 밝히지 않고 있다.⁽⁵⁾

新朝鮮社에서 1934~38년에 편찬한 《與猶堂全書》(鄭寅普·安在鴻校閱)는 위의 두개의 <田論> 중에서 著作年代가 밝혀져 있지 않은 <田論>을 저본으로 사용했으며, 그 후 《茶山全書》 등 모든 출판물이 新朝鮮社의 《與猶堂全書》의 <田論>을 다시 저본으로 사용하여 影印 또는 印刊했으므로 著作年代가 밝혀져 있지 않은 <田論>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③ 金容燮 <18·9世紀의 農業實情과 새로운 農業經營論> 《韓國近代農業史研究》(一潮閣) 1975.

④ 愼鏞廈 <朝鮮後期 實學派의 土地改革思想> 《韓國思想大系》Ⅱ.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6.

(3) 《洌水全書》續集七(韓國精神文化研究院所藏本) <田論>. 이 책의 內題는 《與猶堂文集》으로 되어 있다.

(4) 《與猶堂集》(韓國精神文化研究院所藏本) 第11册, 雜文三. <田論> 참조.

(5) 《與猶堂集》(奎章閣圖書 No. 11894) 第11册의 <田論>은 「論·辨」의 처음을 (註 4)의 親筆本과 똑 같이 <田論>부터 시작함으로써 이를 筆寫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고, 第28册의 <田論>은 (註 3)의 《洌水全書》와 똑같이 「論·雜文·儷文」의 처음을 <易論>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田論>을 배열하고 內題도 《與猶堂文集》으로 기록함으로써 위의 《洌水全書》의 <田論>을 筆寫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親筆本 《洌水全書》가 〈田論〉의 著作年代를 38세 때인 己未年(1799년)으로 밝히고 있고, 奎章閣本이 이를 再確認하고 있으므로, 정약용이 閭田制 土地改革思想을 구상한 문제작 〈田論〉은 그가 38세 때에 쓴 작품임이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다.

정약용이 38세 때는 그에게 어떠한 시기인가? 정약용은 正祖의 총애를 받고 34세 때의 2월에 兵曹參議가 되어 正祖의 바로 측근에서 활동하게 되었으나 반대파가 그를 西學에 관련했다고 규탄하여 7월에 金井察訪으로 좌천되어 지방으로 밀려 나갔었다. 正祖는 정약용이 36세 때에 그를 다시 서울로 불러 올려 奎章閣 校書館의 入直과 節製對讀官으로 측근에 두었으나 반대파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여 正祖가 「구설이 분분하니 물러가서 고요하게 기다리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면서 그를 윤 6월에 谷山府使로 임명하여 지방으로 보내 었었다. 정약용은 그동안 西教와는 완전히 결별을 하고 地方官으로서 업적도 쌓은 후에 38세 때의 5월에 刑曹參議가 되어 正祖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를 받으면서 거리낄 것 없이 中央界에 復歸하였다. 정약용이 38세 때에는 政敵들의 그동안의 공격과 반대를 물리치고 中央政界에 복귀하여 正祖의 두터운 신임 하에서 다시 거리낄 것 없이 뻗어 나아가기 시작 하던 때이다.⁽⁶⁾

정약용의 閭田制 土地改革思想을 담은 〈田論〉은 이와같이 정약용이 한 차례의 수난을 극복한 후 아직 젊고 가장 패기 만만하던 시절에 쓰여진 논문인 것이다.

또한 특히 강조해 두어야 할 것은 정약용의 閭田制가 매우 獨創的 구상이라는 사실이다. 정약용은 중국 古典을 자주 인용하고 특히 《周禮》는 그의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거나 假託하는 근거로 자주 빌어다 썼지만 이들 中國 古典들에 井田制論은 있으나 閭田制論은 전혀 없었다. 오직 《周禮》의 賈公彥의 疏에 閭와 里를 25家로 한다는 행정조직상의 설명이 있을 뿐이다.⁽⁷⁾ 중국에서는 土地制度로서의 閭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閭田制 土地改革思想은 전적으로 정약용의 獨創的 構想인 것이다.

二. 閭田制 土地改革論의 問題意識

정약용의 閭田制 土地改革論은 첫째 豪強의 土地兼併과 地主制度의 弊害를 제거하고 백성의 財產을 均制케 할 것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전개된 것이었다. 즉 정약용은 무엇보다도 먼저 地主制度의 弊害를 극복하고 社會經濟的 平等의 기초위에서 農業生産性을 增大시

(6) 《侯菴先生年譜》第1冊, 英祖 38年 壬午條~正祖 24年 庚申條 참조.

(7) 《周禮》〈天官〉小宰條에 「小宰職曰 以官府之八成 經邦治……三曰 聽閭里以版圖」라고 하고, 《周禮註疏》(奎章閣圖書 No. 중 2783의 2)에 賈公彥의 疏로 위의 「聽閭里以版圖」를 해설하여 「三曰 聽閭里以版圖者 在六鄉則 二十五家爲閭 在六遂則 二十五家爲里 閭里之有爭訟 則以戶籍之版土地之圖 聽決之」라고 쓰고 있다. 이것은 小宰가 다스리는 최저변의 行政單位로서 裁判과 관련 하여 閭里를 논한 것이지 土地制度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키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閻田論의 전개와 첫 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하늘이 이 백성을 낼 적에 먼저 田地를 마련하여 生靈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였고 또한 백성을 위하여 君主와 牧者를 두어 백성의 父母가 되게 하고, 백성의 財産을 均制케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하도록 하였다. …… 強壯者는 더욱 많이 얻게 하고 弱者는 떠밀림을 당하여 땅에 쓰러져 죽게 한다면, 그 君主와 牧者된 자들은 君主와 牧者 노릇을 잘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財産을 능히 均制하여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은 君主와 牧者라고 할 수 있으나, 백성의 財産을 均制치 못하여 다 같이 살 수 있게 못하는 사람은 君主와 牧者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기 때문이다.⁽⁸⁾

豪強에 의한 土地兼併과 地主制度의 弊害에 대한 비판은 비단 정약용 뿐만 아니라 이 시기 實學者들의 공통의 문제의식이었다. 정약용의 선배 실학자인 星湖 李瀾은 「나라 안의 田地가 豪勢家에 의하여 占有되지 않은 것이 없다」⁽⁹⁾고 개탄하였다. 이익은 또 쓰기를 「富者는 阡陌을 連하고 貧者는 송곳 꽃을 땅도 없어서 富益富하고 貧益貧하게 되었다. 내가 보건대 平民이 破産함은 혹 恒心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자도 있고 혹은 高利貸에 더욱 조들림으로 말미암은 자도 있으나, 무릇 官府가 그들의 가축을 벗기고 閭里의 豪強들이 專橫하여 모두 죽히 그들을 破産시킨 것이다」⁽¹⁰⁾라고 통탄하였다.

丁若鏞時代의 地主制度는 併作法과 賭作法의 두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併作法이 지배적인 방법이었다. 併作法은 원래 田稅와 種子는 地主가 부담하고 추수 후에 地主가 小作人(佃戶)으로부터 生産物의 切半(50%)를 收取하는 소작방법이었다. 한편 새로이 대두한 賭作法은 定額法으로서 豊凶에 관계없이 地主가 매년 一定量의 小作料(賭租)를 小作人으로부터 收取하는 소작방법이었다. 일반적으로 賭作法은 併作法 보다는 小作料가 약간 低率이었으나, 당시에는 豊凶의 差가 매우 커서 農業生産의 安定性이 극히 낮았으므로 賭作法도 併作法 보다 아직은 그다지 소작인에게 有利한 것이 아니었다.⁽¹¹⁾

정약용시대의 지배적 地主制度이었던 併作法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地主의 收取가 強化되어 심지어 田稅와 種子도 小作人의 負擔이 되기에 이르렀다.

정약용의 선배 실학자인 燕巖 朴趾源도 沔川郡의 사례를 들면서, 「현재 民戶 가운데 자기의 田地를 가지고 耕作하는 농가는 10의 1,2도 안되는데, 公賦가 10분의 1이오, 私稅가 半을 잘라가니 公私稅를 합하여 계산하면 곧 10분의 6이나 된다」⁽¹²⁾고 지적하고, 農民들이 쉬지 않고 근면하게 耕作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가혹한 制度를 그대로 두고서야 그들이 어떻게 마침내 流民이 되어 굶어 죽지 않겠느냐고 개탄하였다.

(8) 《丁茶山全書》詩文集「論」〈田論〉一.

(9) 《星湖僿說》三. 人事門〈結負之法〉條.

(10) 《齋憂錄》〈生財〉

(11) 慎鏞廈〈朝鮮王朝末期의 地主制度와 小作農民層〉《暎岡崔文煥博士追念論文集》1977 참조.

(12) 《課農小抄》〈限民名田議〉

정약용도 그 후에 쓴 《經世遺表》에서, 地主는 앓아 늘면서 生産物의 10분의 5를 거두어 들이고, 小作人은 小作料로서 生産物의 10분의 5와 田稅 10분의 1을 합하여 總生産物의 10분의 6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있다고 개탄하였다.⁽¹³⁾

또한 정약용은 역시 〈田論〉의 후에 쓴 《牧民心書》에서도 다음과 같이 地主制度의 弊害를 구체적으로 절실하게 쓰고 있다.

생각해 보라. 백성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1結의 田地는 그 수확량이 많으면 800斗이고 적으면 600斗요 최하는 400斗뿐이다. 農夫들은 토지가 없어서 모두 남의 토지를 경작하는데 해가 저물도록 애쓰고 고생하여도 가을의 수확에 이르러 地主가 半을 갈라가니 600斗 중에서 8口의 食糧이나 四隣의 酬備으로 스스로 쓸 수 있는 것은 300斗뿐이다. 다시 여기에서 種子를 除하고 債務를 제하고 그 歲前의 食糧을 제하면 남는 것은 100斗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다시 租稅를 벗겨 빼앗아 가면 農夫는 이와 같이 極에 이르게 된다. 슬프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¹⁴⁾

또한 정약용은 《經世遺表》에서는 地主制度의 弊害와 각종의 賦課로 말미암아 小作農이 실제로 自食하는 것은 總生産物의 10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함을 實例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논해보면, 南方의 情形은 논에 種子 10斗를 심어서 개락 곡식 20菴(石)을 얻는데, 이 중에서 10菴는 地主에게 바치고, 2菴는 種子에 넣고, 2菴는 還上에 넣고, 2菴는 雜賦(빈잡하여 이름은 다 적지 아니한다)에 들어가니, 小作農이 自食하는 것은 많아야 3, 4菴에 지나지 않는다. 先王의 10分の 1稅가 지금은 10分の 7, 8이 되었으니 백성이 어찌 살 것인가.⁽¹⁵⁾

정약용은 자기의 시대에 湖南地方에서는 地主制度와 土地兼併이 만연하여 總戶口 중에서 개략적으로 地主가 5%, 自作農이 20% 小作農(自小作農 및 純小作農)이 70%에 달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田稅와 種子도 모두 小作農이 이를 부담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개탄하였다.

湖南의 풍속은 租稅와 種子를 모두 小作人이 낸다. 내가 생각컨대 이 풍속은 마땅히 禁해야 한다. ……내가 일찌기 말하기를 土地에는 두 主人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 하나는 王이오 그 둘째는 佃夫이다. 이 二者 이외에 누가 감히 主人이 될 수 있는가. 지금은 富強한 사람들이 兼併을 오로지 하여 公稅 외에 또 그 租를 私私로이 거두어 들이니 여기에 土地가 세 主人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湖南의 백성들을 대략 100戶로 잡아 보면, 남에게 土地를 빌려주어 小作料를 받는 자는 5戶에 불과하고 自己의 土地를 自耕하는 자는 25戶이고, 他人의 토지를 耕作하여 小作料를 납부하는 자는 70戶이다.⁽¹⁶⁾

정약용은 이러한 地主制度의 弊害와 土地兼併은 土地改革을 통하여 단호히 폐지되고 財

(13) 《丁茶山全書》政法集 《經世遺表》地官修制 〈田制〉四.

(14) 《丁茶山全書》政法集 《牧民心書》卷十二, 〈田政〉

(15) 《經世遺表》地官戶曹, 第二.

(16) 《丁茶山全書》詩文集 「文」第一集 卷九 〈擬嚴禁湖南諸邑佃夫輸租之俗劄子〉

産의 均制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정약용은 당시의 總耕地面積을 80萬結(英祖 5년 현재의 전국의 耕地面積은 水田이 34萬 4,000結, 旱田이 45萬 7,800結이었으나 여기서는 奸吏들이 누락시킨 田結과 火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로 보고, 당시의 總人口를 800萬名(英祖 29년 현재 서울과 지방의 總人口는 730萬名이었으므로 그는 당시 누락된 人口와 그동안 증가한 人口를 70萬名으로 추산하고 총인구를 800萬名으로 추정하였다)으로 추산하고, 1戶가 10名의 成員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면 每 1戶가 田地 1結씩을 所有해야 그의 이른바 均産이 이루어진다고 계산하였다.⁽¹⁷⁾

따라서 정약용에 있어서는 1戶가 1結 이상의 田地를 所有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몫의 田地를 빼앗은 것이 되는 것이다. 즉 田地 100結의 所有者는 990명을 희생시켜 이 土地를 所有하는 것이고, 田地 400結의 所有者는 3,990명을 희생시켜 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지금 文武의 貴臣들과 민간의 富豪들 가운데에는 1戶에서 數千石의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자들이 심히 많다. 이러한 자들의 田地를 따져 보면 每戶 100結 이하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결국 990人의 人命을 희생시켜 1戶를 살찌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富豪 가운데에는 嶺南의 崔氏나 湖南의 王氏와 같이 곡식 萬石을 수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田地를 계산해 보면, 400結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3,990人의 人命을 희생시켜 1戶를 살찌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朝廷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애쓰고 끊임없이 힘써서 오직 富裕한 사람의 財産을 털어내고 貧困한 사람에게는 보태줌으로써 백성의 財産을 均制케 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君牧의 道로써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¹⁸⁾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약용은 무엇보다도 特權的 兩班官僚와 富豪들의 土地兼併과 地主制度의 근본적인 철폐를 통하여 백성의 均産을 이룰 것을 그의 閭田制 土地改革論의 제일차적 문제의식으로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약용이 閭田制 土地改革論에서 문제의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놓고 먹는 兩班士族을 制度的으로 生産者化하는 문제이었다. 그는 兩班士族들의 遊食者層化를 단연코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生産者化할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또한 선비 등은 열 손가락이 柔弱하여 힘든 작업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 내가 閭田法을 시행하고자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대저 선비란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手足을 움직이지 아니하고서 남의 토지를 併呑하고 남의 勞動力을 먹고 사는가. 대저 선비들이 놓고 먹고 있기 때문에 地利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놓고서는 穀物을 配當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장차 職業을 바꾸어서 밭 이랑과 인연을 맺어야 한다. 선비가 職業을 바꾸어서 밭 이랑과 인연을 맺게 되면 地利는 높아질 것이며, 선비가 직업을 바꾸어서 밭 이

(17) <田論> 一 참조.

(18) <田論> 一.

랑과 인연을 맺게 되면 風俗이 淳厚해질 것이며, 선비가 직업을 바꾸어서 밭 이랑과 인연을 맺게 되면 亂民이 없어질 것이다.⁽¹⁹⁾

정약용은 이 밖에도 그의 閭田制 土地改革論의 문제의식으로서 ③ 國家의 財政收入의 증대 ④ 農業生産性的의 增大 ⑤ 衙門屯田의 弊端의 철폐 ⑥ 吏胥의 弄奸의 배제 ⑦ 兵農一致의 강화 등을 생각하였다.

三. 井田論 · 均田論 · 限田論 批判

정약용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農事짓는 사람에게는 土地를 가지게 하고 農事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土地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使農者得田 不爲農者不得田)⁽²⁰⁾는 것을 그의 토지개혁론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정약용은 「이제 農事짓는 사람에게는 土地를 가지게 하고 農事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土地를 가지지 못하게 하려면 閭田制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래야 내 뜻을 실현시킬 수 있다」⁽²¹⁾고 강조하였다.

정약용은 이러한 입장에서 先賢들의 井田論을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井田論은 旱田과 平田에 대한 土地改革論인데 이미 水田이 발전되어 있고 山谷이 開墾되어 耕作地로 되어 있는 당시의 조건에서는 平野의 旱田을 기준으로 한 井田論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²²⁾

정약용은 井田論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장차 井田制를 시행해야 할 것인가. 아니다. 井田制는 시행할 수 없다. 井田이란 旱田이다. 水利施設이 이미 興하여 있고 메벼와 찰벼를 맛있게 먹고 있으니 어찌 水田을 비릴 수 있겠는가. 井田이란 平田이다. 山의 伐木에 힘써서 山谷이 이미 開墾되었으니 平田을 제외한 山谷의 나머지 土地를 어찌 비릴 수 있겠는가.⁽²³⁾

정약용은 또한 均田論도 시행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均田論의 대표적 주장자는 그의 선배 실학자인 礪溪 柳馨遠이었다.⁽²⁴⁾ 정약용에 의하면 人口變動과 土地肥沃度の 差異 때문에 이상적인 均田을 실시하기 어렵고, 또한 특히 柳馨遠 등의 均田論은 農事짓지 않는

(19) <田論> 五.

(20) <田論> 二.

(21) <田論> 三.

(22) 《經世遺表》<天官吏胥> 第一에서 그 후 丁若鏞은 그의 견해를 바꾸어 山谷과 水田에서도 井田制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井田의 形에 구애받지 않고 井田의 實을 중시하여 水田과 山谷에서도 每田 10結 중에서 1結을 公田으로 삼고 부근의 9結을 私田으로 삼아서 井田制의 原理대로 耕作케 하면 形은 없어도 實은 곧 井田制가 된다는 것이다.

(23) <田論> 二.

(24) 《礪溪隨錄》卷一<田制>上 및 卷二<田制>下 참조.

사람에게도 土地를 分配하려 하기 때문에 적합한 土地改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차 均田制를 시행해야 할 것인가? 아니다. 均田制는 시행할 수 없다. 均田이란 田地와 人口를 계산하여 이를 均分하는 것인데, 戶口의 增減은 달마다 다르고 해마다 변하는 것이므로, 금년에는 甲率로서 分配하고 명년에는 乙率로서 分配해야 할 것이니, 그 터럭과 같은 차이는 교묘하여 查察할 길이 없으며, 土地의 肥沃과 瘠薄의 구별은 頃畝마다 一定치 않으니 어찌 均等할 수가 있겠는가.⁽²⁵⁾

또한 정약용은 限田論도 시행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限田論의 대표적 주장자는 李瀾으로 土地所有의 下限을 설정하는 限田論을 주장하였고,⁽²⁶⁾ 朴趾源은 토지소유의 上限을 설정하는 限田論을 주장하였다.⁽²⁷⁾ 그러나 정약용은 限田制에서는 다른 사람의 名義로 土地所有의 上限과 下限을 용이하게 위반할 수 있고 또한 地主制度가 근절되지 아니하여 農事짓지 아니하는 사람도 土地를 所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였다.

장차 限田制를 시행할 것인가? 아니다. 限田制는 시행할 수 없다. 限田이란 田地를 買入함에 있어서 一定한 程度에 이르면 더 이상 買入하지 못하게 하고 田地를 賣却함에 있어서도 一定한 程度에 이르면 더 이상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령 내가 남의 이름을 빌어서 土地를 限度 이상으로 늘인들 누가 알 것이며, 남이 내 이름을 빌어서 토지를 限度 이하로 줄인들 누가 알 것인가. 그러므로 限田制는 시행할 수 없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사람들은 井田制는 다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均田制와 限田制는 事理에 밝고 時務를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역시 肯定하여 말하고 있으니 나로서는 아무래도 당혹스럽다.⁽²⁸⁾

정약용은 예컨대 柳馨遠 등의 均田論과 李瀾·朴趾源 등의 限田論의 가장 큰 결함은 農事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土地를 分配하거나 土地의 所有를 許與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는 놀고 먹으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다음과 같이 이를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農事짓는 사람에게는 田地를 가지게 하고, 農事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田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均田論과 限田論에 있어서는 장차 農事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土地를 가지게 할 뿐 아니라 農事를 짓지 않는 사람도 土地를 가지도록 하며, 手工業과 商業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또한 土地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무릇 手工業과 商業에도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土地를 가지게 함은 마치 天下 사람보고 놀고 먹으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天下 사람보고 놀고 먹으라고 가르친다면, 그런 법은 진실로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²⁹⁾

정약용은 이러한 관점에서 閭田制 土地改革을 실시하는 것 만이 井田論·均田論·限田論의 결함을 없이하면서 당시의 土地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25) 〈田論〉二.

(26) 《星湖僿說》三. 人事門〈均田〉條 참조.

(27) 《課農小抄》〈限民名田議〉 참조.

(28) 〈田論〉二.

(29) 〈田論〉二.

四. 閭田制의 內容과 生産 및 分配

(1) 閭田制 土地改革의 原則

정약용의 閭田制 土地改革論의 기본원칙은 거듭 지적하는 바와 같이 「農事짓는 사람에게 土地를 가지게 하고 農事짓지 않는 사람에게 土地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使農者得田 不爲農者不得田)」⁽³⁰⁾는 것이다.

정약용의 이 원칙은 한국의 社會思想史에 획기적인 것으로서 <耕者有田>의 원칙을 이미 18세기 말에 확고하게 정립한 것이다.

젊은 시절의 정약용은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의 선배 실학자들의 토지개혁사상인 井田論·均田論·限田論 등을 모두 거부하고 구태여 閭田論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었다. 만년에 정약용의 이 원칙은 그의 井田制 土地改革思想에서 현저히 후퇴되어 어느정도 現實에 타협하였지만 아직 38세 때의 패기만만한 정약용은 豪強의 土地兼併과 地主制度가 만연된 조건 속에서 단호하게 農事짓는 農民만이 土地를 所有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이 원칙에 의거한 土地改革論을 전개하였다.

정약용의 閭田制 土地改革思想은 바로 이 「農事짓는 사람에게 土地를 가지게 하고 農事짓지 않는 사람에게 土地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原則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이었음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2) 閭田制의 基本內容

정약용의 閭田制는 기본적으로 30家口를 1閭로 하여 1單位로 한 農民의 協同農場制 또는 協業農場制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정약용은 대략 30家口를 1閭의 戶口의 기본단위로 하고, 山谷과 川源의 地勢를 참작하여 區劃을 정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土地를 1閭의 土地의 基本單位로 하여 하나의 <閭>를 組織할 것을 구상하였다. 이 때 1閭 안에 포함되는 모든 私有地는 물론 모두 閭의 土地에 넣을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즉 自然的 地勢로 境界를 정하여 이 境界 안에 포함된 土地와 人口 약 30家口를 1閭의 基本單位로 설정한 農民의 協同農場 또는 協業農場를 창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조직은 閭를 출발단위로 하여 3閭=1里, 5里=1坊, 5坊=1邑으로 編制를 만들 것을 구상하였다.

閭田法이란 무엇을 일컬음인가. 山谷과 川源을 기준으로 區域을 劃定하여 境界를 삼고, 그 境界線 안에 포함되어 있는 地域을 1閭로 삼는다. <周制>에서는 25家를 1閭라 하였으나, 지금은 그 명칭만 빌리고, 대략 30家口 내외로 하고 出入이 있도록 한다. 어쨌든 그 率은 반드시 一定할 필요

(30) <田論> 二 및 三 참조.

는 없다.) 閭 셋을 합쳐서 里라 하고(風俗通에는 50家口를 1里라 하였으나, 여기서는 그 명칭만 빌리고 반드시 50家口로 하는 것은 아니다), 里 다섯을 합하여 坊이라 하고(坊은 邑리의 명칭인데 漢代에는 九子坊이 있었고 國俗에도 있다), 坊 다섯을 합쳐서 邑이라고 한다. (周制에는 4井을 邑으로 삼았으나, 오늘날에는 郡縣의 治所를 邑이라고 한다).⁽³¹⁾

즉 정약용에 의하면 農民 약 30家口를 중심으로 산골짜기와 시내·강 등 自然的 地勢를 기준으로 하여 境界를 그어서 1閭를 만드는 것이다. 이 1閭 안에서는 「내 땅 네 땅의 疆界의 구별이 없다」(無此疆爾界).⁽³²⁾ 즉 정약용에 의하면 이 閭안에서는 生産手段으로서의 土地는 閭民의 共有가 되어 내 땅 네 땅의 구별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30家口의 閭民이 1 단위가 되어 土地를 共有하는 協同農場 또는 協業農場이 창설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약용은 閭·里·坊·邑의 이름을 中國의 古典의 제도와 관련시켜 註를 달고 있으나 정약용의 설명대로 단지 명칭을 빌렸을 뿐이고 그의 閭田論은 中國의 古典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뿐만 아니라 명칭도 이미 정약용시대의 朝鮮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던 것들이다. 예컨대 閭와 里를 보면 《周禮》에는 閭와 里가 각각 25家로 되어 있어서 閭里라고 합쳐 불리고 있고 村落單位일 뿐이지 田制와는 하등 관련이 없다.⁽³³⁾ 여기서 정약용이 구상한 閭田制는 이름을 포함하여 모두가 전적으로 獨創的인 그의 아이디어인 것이다.

정약용이 閭와 里를 분리시키고 閭를 30家口의 單位로 설정한 것은 그의 시대의 朝鮮農村의 現實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즉 朝鮮王朝時代의 自然村落은 대략 30戶내외로 구성되어 있었고 自然村落 2~3개가 모여 行政單位로서의 <里>를 구성하고 있었다. 自然村落들은 <里>와 같은 비교적 통일된 행정단위의 漢文名稱이 없이 예컨대 <○○골> <○○말> <○○들> <○○덤>과 같이 순 우리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한문으로 표기할 때는 意譯하거나 音譯하여 사용하였다. 정약용은 이 自然村落에 <閭>라는 통일된 명칭을 붙여 이 30戶의 自然村落을 그 부근의 土地와 묶어서 하나의 生産單位로 하는 <閭(自然村落)協同農場> 또는 <閭協業農場> 제도를 창설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정약용의 閭田制 土地改革論이 空想的인 것이 아니라 당시의 現實과 制度에 깊이 뿌리를 둔 토지개혁론이었음을 시사하는 점이기도 하다.

정약용은 <閭(自然村落)協同農場> 또는 <閭協業農場>을 生産單位임과 동시에 最低邊의 행정단위로 하고 里·坊·邑을 차례로 上位의 行政單位로서만 편성하려고 구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31) <田論> 三.

(32) <田論> 三.

(33) 《周禮註疏》(奎章閣圖書 No. 중 2783의 2) 第5冊, 卷3, p. 8의 賈公彥의 疏「在六鄉則 二十五家爲閭 在六遂則 二十五家爲里……」참조.

(3) 生産과 分配

정약용의 閭田制에 있어서는 閭 안에서는 土地는 共有되어 내 땅 네 땅의 구별이 없고, 生産은 閭民의 共同으로 한다. 즉 閭民이 共同勞動과 共同耕作을 수행하여 生産을 閭民의 共同으로 하는 것이다.

정약용에 의하면, 이 共同勞動·共同耕作을 관리하기 위하여 閭民은 閭長을 選出한다. 閭長은 閭民의 生産作業의 分擔을 지시한다. 예컨대 閭長은 某甲은 이곳을 가지고 某乙은 저곳을 김매게 하여 각자의 勞動과 作業을 分化시켜 지시하며,⁽³⁴⁾ 閭民은 閭長의 명령에 따른다.

또한 閭長은 閭民들이 勞動하고 作業하는 경우 매일 個個人的 勞動量을 <日役簿>라고 하는 장부에 정확히 記入하여 두는 일을 한다.⁽³⁵⁾

정약용시대의 朝鮮農村에는 共同勞動의 組織으로서 <두레(社, 農社)>가 洞里마다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農繁期の 農耕 이외에도 堤堰이나 泮 등의 修築을 비롯하여 개인이 하기 어려운 작업에는 共同勞動의 관습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약용이 共同勞動과 共同耕作을 통하여 生産을 共同으로 하는 구상을 한 것은 空想的인 것이 아니라 당시의 現實과 밀접히 관련을 가진 것이었다.

정약용의 閭田制에 있어서는 閭 안의 生産은 공동으로 하지만 消費는 家族單位로 한다. 따라서 수확 후에는 生産物을 家族單位로 分配하는 것이다.

生産物 分配의 기준은 生産에 投入된 投下勞動量이다. 즉 가을이 되면, 수확한 穀物을 閭中の 公會堂에 모두 가져다 놓고, 먼저 나라에 바치는 公稅와 閭長의 俸給을 控除한 다음, 그 나머지를 閭長이 <日役簿>에 記入해 둔 投下勞動量에 따라 分配하는 것이다.

閭에는 閭長을 두며, 무릇 1閭의 土地는 1閭의 백성으로 하여금 共同으로 耕作케 하고, 내 땅 네 땅의 구별을 없이하며, 오직 閭長의 命令에 따른다. 閭長은 매일 개인 개인의 勞動量을 冊簿에 기록해 두었다가 가을이 되면 五穀의 收穫物을 모두 閭長의 宅(閭中の 都堂)에 가져 온 다음 그 穀物을 分配한다. 이 때 公家에 바치는 稅를 먼저 내고, 다음에는 閭長의 俸給을 내며, 그 나머지를 가지고 日役簿에 의거하여 勞動量에 따라 閭民에게 分配한다.⁽³⁶⁾

投下勞動量에 의거한 生産物을 分配하는 方法은 먼저 總生産量 중에서 公稅와 閭長의 俸給을 공제한 나머지 可分配生産量을 계산하고, 다음 閭의 總勞動日數를 계산한 후에 每勞動量 1日當 日配穀物量을 산출한다. 그 다음은 家族制로 <日役簿>에 기록된 投下勞動日數를 계산하여 여기에 投下勞動量 1日當 分配量을 곱함으로써 산출하고 있다. 이것을 公式化

(34) <田論> 四 참조.

(35) <田論> 三 참조.

(36) <田論> 三.

하면 다음과 같다.

$$\textcircled{1} \frac{\text{總生産量} - (\text{公稅} + \text{閭長의 俸給})}{\text{總投下勞働日數}} = \text{投下勞働1日當分配量}$$

$$\textcircled{2} \text{投下勞働1日當分配量} \times \text{家族別投下勞働日數} = \text{家族別分配量}$$

정약용은 이 계산방법을 實例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령 公稅와 閭長의 俸給을 제외한 穀物 전부가 1,000斛(10斗를 1斛이라 한다)이고, 冊簿에 기록된 勞働日數가 2萬日이라고 한다면, 每1日에 대한 配當穀物은 5升이 될 것이다. 만약 어떤 農夫의 夫婦와 자식을 포함한 全家族의 冊簿에 기록된 勞働日數가 모두 800日이면, 그가 分配받는 穀物의 量은 40斛이 될 것이다. 또 가령 어떤 農夫의 冊簿에 기록된 勞働日數가 10日이라면 그의 配當穀物은 5斗뿐일 것이다. 勞働力을 많이 投下한 사람은 그만큼 配當穀物이 많고 勞働力을 적게 投下한 사람은 그만큼 配當穀物이 적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누가 노력하지 않고서 자기의 配當穀物이 많기를 바라겠는가.⁽³⁷⁾

정약용은 投下勞働量에 의거한 生産物의 分配는 公正할 뿐만 아니라 投入勞働 增大를 자극하여 農業生産力을 增大시키고 백성의 資產을 豊足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견하였다.⁽³⁸⁾

정약용의 投下勞働量에 의거한 生産量의 分配는 그가 착안한 매우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生産物의 分配方法이었으며 그의 土地改革思想의 탁월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五. 人口와 勞働力의 移動

정약용의 閭田制에 있어서 生産物의 分配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하나는 農民의 家族勞働力의 移動의 문제이다. 즉 어떤 農民家族이 다른 곳으로부터 한 閭에 移入하려고 하거나 또는 한 閭로부터 다른 곳으로 移出하려고 하는 경우의 문제이다.

정약용은 이 경우에 적어도 8~9년간을 完全히 自由移動을 허락해 주면 각 <閭>의 人口와 土地의 比率이나 勞働生産性이 均等하게 되기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농민의 自由意思에 의한 完全한 自由移動을 우선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예컨대, 한 閭로 농민이 移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閭의 ① 投下勞働 單位當 分配量이 많거나 ② 人口當 土地의 比率이 높거나 ③ 勞働生産性이 높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移入하려고 하여 利益을 좇는 合理的인 이유로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한 閭가 있어 30家が 함께 1閭를 이루고 있다고 하자. 閭長이 말하기를 某甲는 이곳을 갈

(37) <田論> 三.

(38) <田論> 三 참조.

고 乙某는 저곳을 김매라고 하여 각자의 職務가 이미 나누어져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쟁기와 보습을 짊어지고 妻子를 이끌고 와서 한 자리를 달라고 하면 어찌할 것인가. 받아들인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閭의 田地는 더이상 넓힐 수 없는데 1閭의 백성은 一定한 定數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백성이 利를 좇는 것은 물이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田地는 넓은데 人力이 不足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田地는 작지만 生産되는 糧穀이 많다는 것을 알았거나, 秋收 때 分配받는 糧穀이 많다는 것을 알았거나 한 다음에 쟁기와 보습을 짊어지고 妻子를 이끌고 와서 한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³⁹⁾

또한 정약용은 農民家族이 반대로 한 閭로부터 다른 곳으로 移出하는 경우에는 ① 人口에 대한 土地의 比率이 작거나 ② 勞動生産性이 낮거나 ③ 投下勞動單位當 分配量이 적거나 하기 때문에 害를 피하려고 하는 合理的인 이유가 있어서 떠나려 하는 것이므로 그 移出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반대로 한 閭가 있는데 20家が 1閭를 이루고 있다고 하자. 閭長이 말하기를 甲某는 저곳을 갈고 乙某는 이곳을 거름을 주라고 하여 각자의 職務가 이미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農具를 짊어지고 妻子를 이끌고 가면서 다른 樂土로 가겠다고 말한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또한 허락할 수 밖에 없다. 백성들이 害로운것을 避하는 것은 불이 습한 곳을 피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즉 田地는 좁은데 人力은 남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勞動力은 倍나 드는데 얻는 穀物은 적다는 것을 알았거나, 가을의 配當穀物이 적다는 것을 알았거나 한 다음에 農機具와 妻子를 이끌고 다른 樂土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命을 내리지 아니하여도 백성들의 貧富가 均等해질 것이다. 마음대로 오고 마음대로 가기를 8,9년이 못되어 나라의 田地는 均等해질 것이다.⁽⁴⁰⁾

정약용은 여기서 人口와 勞動力의 移動의 自由를 완전히 보장해 주면 利를 추구하고 害를 피하려는 農民들의 合理的인 行動에 의하여 일정기간(8~9년) 후에는 각 閭의 勞動生産性과 貧富가 均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⁴¹⁾

정약용은 이와 같이 하여 8~9년간 人口와 勞動力의 移動을 완전히 보장해준 후에는 각 閭의 勞動生産性이 均等해질 것이므로, 閭田法이 시행된지 10여년째 부터는 비로소 戶籍을 작성하고 農民의 家屋을 登錄시키고 文券을 만들어 農民의 移動을 人爲的으로 관리해서, 오직 勞動生産性이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또는 土地에 대한 人口의 比率의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移動하는 경우만을 限하여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정약용이 人口와 勞動力의 自由移動에 의한 生産力의 均等化 이후에는 計劃的 管理가 필요함을 주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한지 8,9년이 되면 백성들의 分布狀態가 대체로 均等하게 될 것이고, 시행한지 10여년이 되면 人口의 分布狀態는 크게 均等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의 分布狀態가 均等해진 다음에

(39) <田論> 四.

(40) <田論> 四.

(41) 丁若鏞은 여기서 農民의 完全한 合理的인 行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慣習이나 非合理的인 行動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는 여기서 自由移動에 의한 自然的인 均衡의 달성이라는 매우 樂觀的인 社會經濟觀을 피력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로소 戶籍을 작성하여 그들의 사는 집을 登錄시켜 文券을 만들고, 移動을 管理하되, 한 사람이 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데 制限을 정하고 한 사람이 떠나더라도 이를 허락하는데 節制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田地는 넓은데 人口가 不足한 곳은 받아들여야 하고, 人口가 적은데 生産糧穀이 많은 곳도 받아들여야 한다. 반대로 田地는 좁은데 人口가 많은 곳은 떠나가는 것을 허락해야 하며, 人口가 많고 生産糧穀이 적은 곳도 떠나가는 것을 허락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서 移動하는 사람은 나그네가 되어 갈 곳이 없을 것이다. 나그네가 되어 갈 곳이 없으면 다시는 떠나가는 사람도 떠돌아오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⁴²⁾

정약용은 먼저 일정 기간의 人口와 勞動力의 完全한 自由移動을 보장하여 주면 利를 추구하고 害를 피하는 人間의 合理的 行動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각 閭 사이의 勞動生産性的 均等化가 대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그 다음에는 人口와 勞動力의 自由移動에 制限을 가하여 勞動生業性이 더욱 均等化되는 방향으로만 人口와 勞動力의 移動을 許可하는 제도를 수립할 것을 제의하고 있는 것이다.

六. 閭田制에 있어서의 田稅制度

정약용은 다음에 그의 閭田制에 있어서의 田稅 문제를 논하였다. 그는 田稅는 〈什一稅〉(10분의 1稅)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田稅가 總生産物의 10분의 1보다 적으면 나라가 文化政治를 할 財政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반면에 10분의 1보다 많으면 가혹한 收奪이 된다고 보았다.⁽⁴³⁾

정약용은 당시의 田稅가 수확량의 20분의 1 밖에 안되는데 小作料는 10분의 5나 되어, 나라는 財政의 가난으로 지탱하지 못하고 반면에 私的 地主는 폭군이 되어 백성을 收奪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는 閭田制를 실시하여 地主制度를 폐지하고 〈什一稅〉를 실시하면 나라의 백성이 다 같이 富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토지의 수확량이 100斗가 되는 경우 公家의 稅는 불과 5斗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20분의 1에 해당된다. 그런데 私家의 稅는 50斗가 되어 이는 10분의 5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公家は 大額이 되고 私家は 大槩이 되어, 나라는 가난하여 지탱하지 못하니 이는 도대체 무슨 法을 따랐음인가. 남의 土地를 兼併하는 사람을 없애고, 什一稅를 시행하면, 나라의 백성이 다 같이 富裕하게 될 것이다.⁽⁴⁴⁾

정약용의 閭田制에 있어서의 田稅制度論 중에서 획기적인 주장의 하나는 田稅定額制를 주장한 점이다. 그는 豊凶에 따라 田稅가 變動되지 않도록 一定하게 田稅額을 固定하는 것은 한편으로 國家財政을 安定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백성의 災害에 대한 對策을 높이도록 한다

(42) 〈田論〉四.

(43) 〈田論〉六 참조.

(44) 〈田論〉六.

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年平均生産量을 산출하여 10분의 1의 率에 일치하도록 田稅額을 一定하게 法定할 것을 구상하였다. 그대신 凶年의 경우에는 國家가 그 田稅分을 貸與하였다가, 平年작보다 豐年이든 해에 그 貸與分을 回收하는 방법에 의하여 田稅의 定額制를 유지할 것을 구상하고, 매년 豐凶의 정도를 踏驗하는 제도를 반대하였다.

장차 매년 豐凶을 보아 그 稅를 올리고 내릴 것인가. 그것은 오직 井田制에서는 가능하지만 閭田制에서는 될 수 없다. 土地의 肥沃함과 瘠薄함을 보고, 生産되는 糧穀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數年 이것을 比較한 平均値를 常數로 定하여 그 總額을 一定하게 하여 加減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크게 凶年이 드 해에는 權道로 그 稅를 임시로 貸與하였다가 크게 豐年이 든 해에 그 수량대로 償還하면 나라는 나라대로 一定한 歲入이 있고 백성은 백성대로 一定한 供納이 있게 되어 모든 혼란이 제거될 것이다. 凶年에 백성들이 租稅의 蠲減을 희망하고 이를 꺼려하지 않는 것은 그 租稅의 蠲減額이 영원히 면제되기 때문이다. 만일 豐年에 償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蠲減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꺼려하게 될 것이다. 蠲減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꺼려하게 되면 奸邪함과 속임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⁴⁵⁾

정약용은 自然災害로 영구히 開墾하지 못할 토지에 대해서는 영원히 稅를 면제시키고, 반면에 新開墾地는 수십년에 한번씩 土地臺帳에 올린다면 면제되는 稅額의 額數를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什一稅〉의 실시로 國家의 財政을 튼튼히 하여 官吏들에 대한 俸祿制度를 確立함으로써 官료제도의 기강을 세우는 효과까지 얻으려고 하였다.⁽⁴⁶⁾

七. 閭田制와 兵農一致

정약용은 또한 그의 閭田制를 그의 兵農一致思想에 의거하여 兵制와 結合시키려고 하였다.

정약용은 당시의 兵制를 戶丁法과 戶布法(軍布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 제도들이 문란해 있으며, 특히 戶丁을 내어 隊伍를 편성하는 兵士들에 있어서는 軍隊라고 부르기 어려운 만큼 統率과 紀綱이 문란해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閭田制를 실시하여 閭의 閭長을 哨長으로 삼고, 里의 里長을 把總으로 삼으며, 坊에는 坊長을 두어 千總으로 삼고, 邑에는 縣令을 두어 統制하도록 하면 田制가 바로 잡힐 뿐 아니라 兵制가 또한 그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옛날에는 兵이 農에 一致하였다. 이제 閭田法을 시행하면 兵制를 바로 잡는데 더욱 좋다. 우리나라 제도에는 兵이 두가지로 쓰이고 있으니, 하나는 隊伍를 編成하여 國경의 邊란에 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軍布를 거두어들여 서울의 兵을 養成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모두 케지할 수

(45) 〈田論〉六.

(46) 〈田論〉六 참조.

없다. 그런데 隊伍를 편성한 士兵들은 언제나 統率되어 있지 못하여 將帥와 兵卒이 서로 얼굴도 잘 익히지 못하고 서로 쓰임이 되지 않고 있으니 어찌 兵이라고 하겠는가. 이제 閭에는 閭長을 두어 哨官을 삼도록 하고, 里에는 里長을 두어 把總을 삼도록 하며, 坊에는 坊長을 두어 千總을 삼도록 하고(里長은 大閭의 長으로 하여금 兼하게 하고 坊長은 里長 중에서 賢者를 골라 兼하게 하되 俸祿을 이중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 邑에는 縣令을 두어 統制하게 한다면 田制가 바로 잡히면서 동시에 곧 兵制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⁴⁷⁾

즉 정약용은 여기서 閭 그 자체를 동시에 하나의 戰鬥小隊로 編成하여 閭一里一坊一邑에 따라 隊伍를 편성함으로써 兵農을 完全히 一致시키려고 한 것이다.

정약용에 의하면 閭田制에 있어서는 이미 閭長의 命令에 의하여 閭民이 生産活動을 진행하는 作業訓練이 되어 있으므로 名實相符한 兵農一致의 實을 거둘 수 있으며, 또한 1閭는 셋으로 나누어 그 3분의 1을 戶丁을 내도록 해서 隊伍編成에 응하도록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戶布를 내도록 하면, 종래의 兵制의 폐단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田地에서만 일하고, 個人은 각기 자기의 私私로운 일만 해왔기 때문에 紀綱이 서지 못하고 命令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 閭田法에서는 열 식구의 命運이 閭長에게 달려 있어 1년 내내 분주하게 閭長의 절제를 따라야 하는데, 이로써 兵制를 삼는다면 進退가 規律대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教習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개 1閭의 백성을 셋으로 나누고 그 3분의 1은 戶丁을 내도록 하여 隊伍編成에 응하게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戶布를 내게 하여 軍需에 충당하도록 하되, 役丁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戶布를 加減할 일이다. 이렇게 하면 壯丁을 징발하여 充軍하는 폐단이 마침내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⁴⁸⁾

정약용은 閭田法을 시행하면 그 효과로서 문제의 戶布法도 저절로 시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⁴⁹⁾

여기서 우리는 정약용의 閭田論이 兵農을 一致시키려는 그의 兵制改革의 원대한 구상에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八. 閭田制에 있어서의 士·工·商의 問題

정약용은 그의 閭田制 土地改革論에서 거듭 지적하는 바와 같이 農事짓는 사람에게만 土地를 가지게 하고 農事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土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原則을 주장하여, 士·工·商의 土地所有를 반대하였다.

정약용은 農業과 手工業과 商業의 社會的 分業을 매우 강조했으며, 工匠(手工業者)은 그의 製造品을 販賣하여 食糧을 購入하고, 商人은 그가 획득한 貨幣로서 糧穀을 購入하도록

(47) <田論> 七.

(48) <田論> 七.

(49) <田論> 七 참조.

하여, 각각 獨立된 分業으로서 자기의 職業에 專念케 할 것을 주장하였다.

農事짓는 사람이 田地를 가지게 하고 農事짓지 않는 사람은 田地를 가지지 못하게 하며, 農事짓는 사람은 糧穀을 分配받게 하고 農事짓지 않는 사람은 糧穀을 分配받지 못하게 한다. 工匠은 그들이 만든 器械로서 糧穀을 바꾸게 하고 商人은 貨幣로서 糧穀을 사게 한다면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⁵⁰⁾

따라서 정약용의 閭田制에 있어서는 商人과 手工業者는 共同耕作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生産物 分配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商人과 手工業者는 오직 자기들의 職業인 商業과 手工業에 전념하여 그 곳에서 축적된 利潤으로 閭民으로부터 食糧을 交換하고 購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약용의 閭田制는 耕作農民만의 協同農場 또는 協業農場이며, 商人과 手工業者는 이로부터 完全히 獨立되어 閭田이라는 協同農場 또는 協業農場과 社會的 分業關係에 서게 된다.

정약용이 商業과 手工業을 閭田으로부터 完全히 分離 獨立시킨 것은 한편으로 그의 시대의 商業과 手工業의 일정한 발달을 그의 사상 속에 반영시킨 것임과 동시에 또한 다른 한편으로 商業과 手工業을 農業으로부터 完全히 分離 獨立된 獨自의 社會分業으로 크게 발전시키고자 한 그의 進步的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¹⁾

정약용에게 가장 문제가 된 것은 〈土〉〈兩班〉의 경우이었다. 정약용은 士族도 낚고 먹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士族은 스스로 生産勞動에 참여하지 않는한 生産物의 分配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⁵²⁾

정약용은 士族도 職業을 바꾸어 農事に 종사케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만일 士族이 農業에 종사할 수 없으면 다른 職業에서라도 반드시 生産活動에 종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士의 職業으로서 정약용이 언급한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⁵³⁾

- ① 農事に 종사하는 일.
- ② 商業에 종사하는 일.
- ③ 手工業에 종사하는 일.
- ④ 教育에 종사하는 일.
- ⑤ 實理의 講究에 종사하는 일.

(50) 〈田論〉五.

(51) 《經世遺表》地官修制〈田制〉—(井田論一)에서 丁若鏞은「工과 商의 二家は 그 利가 農夫 보다 厚한데 또한 이어서 官이 田祿을 給하던 만드시 그로 하여금 富益富하게 하리니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라고 쓰면서 그의 井田制 土地改革論에 있어서도 工·商을 土地分配對象에서 제외하였다. 그는 자기시대의 商業과 手工業의 利潤이 農業의 收益 보다 이미 크기 때문에 工·商은 獨立分業으로 오히려 農民 보다 富裕한 生活을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생각이 이 보다 앞 선 閭田制 土地改革論에서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2) 〈田論〉五 참조.

(53) 〈田論〉五 참조.

정약용은 위의 일 중에서 <士族>들이 農事に 종사하여 낮에는 農耕을 하고 밤에는 讀書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였고. 도저히 肉體勞動을 할 수 없는 士族들의 경우에는 實理講究에 종사하는 것을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정약용이 강조한 實理講究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⁵⁴⁾

- ① 土質에 적합한 農作物 研究.
- ② 水利의 研究.
- ③ 勞動力을 절약할 수 있는 器械의 製造와 研究.
- ④ 農事技術의 研究와 指導.
- ⑤ 牧畜法의 研究와 指導.

즉 정약용은 士族들이 利用厚生할 수 있는 實學을 연구하여 生産에 기여할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

정약용은 만일 <士>들이 이러한 實理講究에 종사한다면 그들의 노력과 공헌은 肉體勞動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1日의 研究 노력을 10日의 육체노동으로, 10日의 연구노력을 100日의 육체노동으로 평가하여 <日役簿>에 기입해야 할 것이라고 그 技術研究의 重要性을 강조하였다.

(선비 중에서) 반드시 職業을 바꾸어 밭 이랑과 인연을 맺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장차 어찌할 것인가. 그런 경우에는 職業을 바꾸어 手工業이나 商業을 할 수도 있을 것이오, 아침에는 밭갈러 나가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古人의 書籍을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富民의 子弟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生計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오, 實理를 講究하여 土宜를 研究하고, 水利를 일으키고, 器械를 製造하여 노력을 덜어주기도 하며, 農事技術과 牧畜法을 指導하여 農民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 功이 어찌 肉體勞動을 하는 사람의 그것에 비하겠는가. 1日의 勞動을 10日로 기록하고 10日의 勞動을 100日로 기록하여 그에 따라 穀物을 分配받아야 옳을 것이다. 선비라고 어찌 穀物의 分配가 없을 것인가.⁽⁵⁵⁾

즉 정약용은 士大夫層도 生産者化함으로써 生産物의 分配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士>들이 利用厚生을 위한 技術研究에 종사하는 경우를 가장 높이 평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약용은 이상과 같이 閭田制를 실시하여 착취적 地主制度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들을 士族까지 모두 生産者化하여 生産勞動에 종사케 하면 결국 나라도 富裕하게 되리라고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노력을 다하지 아니함이 없으면 土地의 利가 다하지 아니함이 없고, 土地의 利가 일어나면 백성들의 資産이 豊足해지며, 백성들의 자산이 풍족해지면 風俗이 淳厚해지고 孝弟의 道德이 확립된다. 이것은 土地制度로서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⁵⁶⁾라고 쓰

(54) <田論> 五 참조.

(55) <田論> 五.

(56) <田論> 三.

고 있다.

즉 정약용은 閭田制 土地改革을 단행하여 자기시대의 土地制度의 矛盾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九. 閭田制 土地改革論의 問題點

정약용의 閭田制 土地改革論은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그가 제기하여 설정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짧은 논문인 <田論> 속에 그의 構想을 集約시켜 놓은 것이므로, 불명확한 점이 있고 더욱 알고 싶은 점이 몇가지 남는다.

첫째로, 당시 土地私有制度가 확립되어 있던 사실에 비추어 私田을 閭田에 포함시킬 때의 私田을 어떻게 評價하여 편입시킬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당시 土地所有는 매우 不均等하여 富豪는 광대한 土地를 私有하여 地主化되어 있었고 한편으로 방대한 小作農層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閭田制를 실시한다면 小作農層과 自小作農 또는 自作小農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나, 強大한 세력을 갖고 있던 地主層과 大農層은 반드시 이에 抵抗할 것인데, 그들의 私田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評價하여 閭田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분명치 않다.

정약용이 地主層과 大農層의 私田을 國家權力에 의거하여 報償 없이 閭田에 編入시키려 한 것인지, 또는 報償을 전제로 한 것인지, 報償을 구상하였다면 私田의 價格評價를 어떻게 하고 그 代價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불하려고 했는지가 밝혀져야 그의 閭田論의 當時의 實施可能性의 程度가 분명하여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그의 閭田制에서는 高度의 管理技術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閭長을 선출하여 閭民이 閭長의 作業指示와 命令에 따른다는 정도 이외에는 자세한 논급이 없다. 물론 그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겠지만 당시의 科學의 수준에서 協同農場制度 또는 協業農場制度를 확립하려면 이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부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로, 全國의 各閭 사이의 人口와 勞動力의 移動으로 말미암은 勞動力單位當 耕地面積과 勞動生産性的 不均等과 分配量의 不均等이 人口移動의 完全한 自由化를 8~9년간 보강해 줄으로써 과연 均等化될 수 있을지 또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人口와 勞動力의 移動은 資本의 移動처럼 流動性이 크지 못하며 또한 특히 農民은 자기의 緣故地에 執着하려는 性向이 강하므로 이 문제는 더욱 큰 의문점이 된다.

따라서 정약용의 閭田制에서는 모든 閭 사이의 勞動生産성과 勞動力單位當 耕地面積 및 分配量의 均等化를 실현하기 위한 더욱 계획적인 대책이 부수되어야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十. 맺 음 말

이러한 몇가지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의 閭田論은 당시의 土地問題와 社會經濟問題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土地改革思想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정약용의 閭田論을 理想에 지나지 않을 뿐이요 空想的인 土地改革思想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으나, 이것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그의 閭田論은 그 기본적 原理만을 간단히 밝힌 것 뿐이고, 그 自體的 實現方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급한 것이 없으므로, 그 實現方法의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實施可能하게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田論〉의 기본 구상만을 가지고 空想的 土地改革思想이라고 결코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정약용의 閭田制 土地改革思想은 본질적으로 〈農民的 土地改革〉을 매우 차원높게 주창하면서 그 原理를 밝힌 것이다. 그것은 정약용시대의 農村社會의 現實에 깊이 뿌리를 둔 사상이었다. 예컨대 그것은 당시 광범위하게 마을마다 존재하고 있던 〈두레〉 등의 共同勞動組織과 관련된 것이며, 農耕과 提堰·泆의 修築 등에서 널리 관행되던 바와 같은 共同勞動의 實在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또한 정약용의 閭田制 土地改革思想은 그의 社會思想 중에서 돌출한 부분이 아니라 그가 패기만만한 젊은 시절에 쓴 〈湯論〉 〈原牧〉 〈原政〉 등의 작품에서 제시한 백성을 統治와 權力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백성 중심의 그의 새로운 民本思想과 사상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었다.

물론 정약용의 閭田制 土地改革思想은 당시 實現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매우 獨創적이고 進步的인 사상이며, 우리나라 社會思想史에 획기적인 知的 遺産을 남긴 것이었다.